

<p>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>의안 번호 554</p> <p>2000. 5. 문교보사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4월 10일,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 사위원회 (2000년 4월 27일) 상정 · 의결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송영식 기획관리실장) 가. 제안이유 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6216호 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6730호 2000.2.28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 치시키고,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 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, 동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던 것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,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 하려는 것임. 나. 주요골자 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 변경(안 제1조) ○ 종전 "정기회"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 무감사를 "정례회"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(안 제2조제2항) 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병국) 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2000.1.28 개정) 및 동법시행령(2000.2.28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, 지방자치 법(2000.1.28)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 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, 또 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은 "공무원복무규</p> <p>정 제9조"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도 록 한 것은 "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2조"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 5. 토론요지 : 없음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 음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	<p>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>의안 번호 555</p> <p>2000. 5. 문교보사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4월 10일, 서울특별시 교육 감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 사위원회 (2000년 4월 27일) 상정 · 의 결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송영식 기획관리실장) 가. 제안이유 ○ 교육부의 시 · 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 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이 개정(2000. 3. 1)됨에 따라 감축된 서 울시교육청 총 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 려는 것임. 나. 주요골자 ○ 총 정원을 91명 감축함.(총 정원 : 7,369명 ⇒ 7,278명) 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병국) 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2000.1.28 개정)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, 또한 교육부의 시 · 도교</p>
--	---